

은평지구 토지이용계획도



▶ 세부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

○ 근린생활시설 2-9, 2-10, 2-11



| 구분 | 계획내용 |
|-----|--|
| 용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허용용도 : 제1,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, 안마원 제외),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(유치원에 한함),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(어린이집에 한함) · 불허용도 :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|
| 건폐율 | 60% 이하 |
| 용적률 | 200% 이하 |
| 높이 | - |
| 배치 | · 주출입구는 주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|
| 형태 | · 1층에 샷터 설치시 벽면의 50%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하도록 함 |
| 색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원색의 사용을 금함 · 인접 건축물과 동일 계통의 색채 사용 |
| 건축선 | · 건축한계선 : 2m |